

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 규정

1. 전국소년체육대회

-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상위 입상자(개인종합순위1위~5위)로 5명 선발한다. 2명 추천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전년도 1차 평가전 기록은 참고로만 인정하며 당해 연도 선발전 상위기록 선수를 최종 선발한다.
만약 상위 순위가 대회 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자가 출전한다.
선발전 1회 실시 체조 단체 종목 특성상(7명-5명-4명), 대회의 개인종합 상위 순위 5명을 선발하고 잔여 인원은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추천함 부득이하게 선발전을 실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선발

2.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시·도 대항 체조경기대회

- 경기도 선발전 상위개인종합점수 선수를 최종 선발한다.

3.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·도대항 체조경기대회

- 경기도 선발전(소년체육대회 선발전 결과로 정한다)상위개인종합점수 5명 선수를 선발하고,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며 학교에서 개별 출전한다.
만약 상위 기록자가 본선 대회 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 자가 출전한다.

4. 전국체육대회

- 고등부. 일반부 선수선발 3개 대회
중별선수권, KBS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및 대학 일반 선수권대회
위 3개 대회 예선 및 결승 경기 상위 개인종합점수 선수를 선발한다.
체조 단체 종목 특성상(7명-5명-4명), 대회의 개인종합 상위 순위 5명을 선발하고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함.

5. 선수선발 적용기간

-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 전 국내 마지막대회까지 적용한

다.

6. 경기도 대표 지도자(각종대회, 각종캠프, 전지훈련)는 경기도체조협회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임의 선발한다.

- 경기도 대표 선수(각종캠프, 전지훈련, 기타등등)는 경기도체조협회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임의선발한다.

※ 경기도체육회 규정

- 기록경기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목별 채점 방법에 의거 점수획득이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.
- 소년체육대회, 전국체육대회 관련 기준기록 적용은 참가 신청일까지의 기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.

※ 2. 교보생명컵 대회 관련 시도대항으로 변경 시에만 적용한다.